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8.7(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아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새롭게 개편한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 후, 7.24. 첫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 논의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평가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7.24(화)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개별 산재처리를 위한 업무관련성 조사에 치중하여 예방적 집단 역학조사가 소홀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위원을 전면 재구성한 이후로 처음 개최한 것이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개편의 내용을 보면, 평가위원 중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분야를 제외하고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확대·재구성하였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했으며 평가위원회를 운영 분과, 작업환경평가 분과 및 업무관련성평가 분과로 나누어 전문분야별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결과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역학조사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첫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를 상정·심의하였다.

“건강관리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09~’11년)’ 결과와 “반도체 산업 보건관리개선 모니터링위원회”(‘11년 11월~)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노·사가 적절한 작업환경과 건강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공정인 웨이퍼가공 및 조립라인의 각 공정별 유해요인 노출특성, 건강상 유해성, 작업환경관리·건강관리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리하고 특히, 유지·보수작업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등 현장의 근로자는 물론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건강관리 매뉴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 질병의 판정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강화 방안과도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과정의 변화가 기대된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재해조사 →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동안 판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앞으로,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객관화·전문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첫째,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개선(질병의 종류와 유해인자 확대)하여 사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둘째,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판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③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재해조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역학조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④ 넷째,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자 증언청취 및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당 증액, 전문조사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One-Stop 서비스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소속 산재병원 내에서 산재 근로자에게 요양과 보상, 재활 등의 산재보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7월 16일부터 대전산재병원과 창원산재병원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산재환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보험급여와 재활서비스 등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할 때 치료는 산재병원에서 받더라도 별도로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는 병원 내에서 각종 보험급여 신청, 장해판정, 심리·재활상담,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한 번에 제공받게 된다.

산재병원은 '10년 4월 공단과 통합을 하였으며, 공단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재병원의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이번 One-Stop 서비스 실시도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One-Stop 서비스가 단순히 장소만 옮겨서 산재보험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게는 공단의 전문적 재활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도 병원내에서 직접 제공한다.

'내일찾기서비스'는 요양초기단계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직업복귀가 가능토록 공단이 개발하여 올해부터 실시한 전문적 재활서비스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1년에 걸쳐 전문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잡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공단은 선진국이 산재병원 내에서 치료는 물론 요양초기부터 심리적 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활을 거둔다는 것에 착안해 지난해 한국형 윈스톱서비스 모델 개발에着手하여 올해초부터 인천산재병원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금번에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공단은 2013년에는 대구·안산·순천·태백·동해지역의 산재병원에도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명실공히 산재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042-670-5291), 창원산재병원(☎055-280-7642), 인천산재병원(☎032-500-0846)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